

# 우리나라의 廢棄物處理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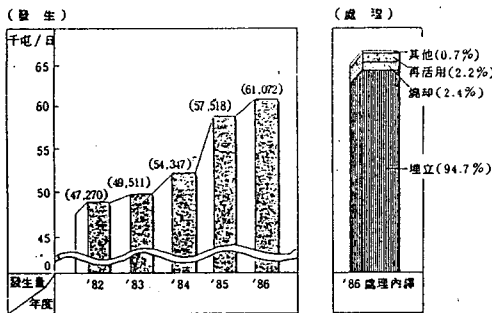
김규응 / 환경청 폐기물제도과장

##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가. 쓰레기

'86년도의 쓰레기 발생량은 61,072톤/日로서 이의 94.7%가 埋立에 의존하고 있으며 燒却處理는 불과 2.4%에 불과하다. 1일배출량은 1.95kg으로 외국(일본: 0.79kg)에 비하여 많은양이 배출된다. 이것은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기인된다. 연탄재는 총쓰레기 배출량의 44.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음식물류가 가연성 쓰레기의 45%나 되고있어 燒却으로 處理할 경우 보조연료를 병합하여야 되는 어려운점을 안고 있다.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쓰레기의 性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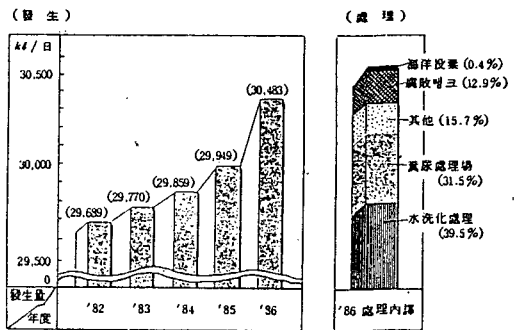
( '86基準 ) (單位: 噸/日)

구분	량	비율
計	61,072	100%
煤炭灰	27,155	44.5%
飲食物類	14,013	22.9%
종이類	5,814	9.5%
木材類	2,123	3.5%
金屬主材類	2,416	4.0%
其他	9,551	15.6%

### 나. 糞尿

糞尿 배출량은 30,483kl/日로서 이는 水泔化에 의하여 37.5%가 처리되며 糞尿終末處理場에 의하여 31.5%, 부패탱크에 의하여 12.9%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0.4%는 海洋投棄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타 자가처리가 15.7%로 나타나고 있다.

### 糞尿발생 및 처리현황



한편 糞尿終末 처리시설은 '86년말까지 도시형 83개시설 읍면용 92개시설 총 175개 시설을 설치하여 1일처리 능력이 12,936kl이다.

### 糞尿處理施設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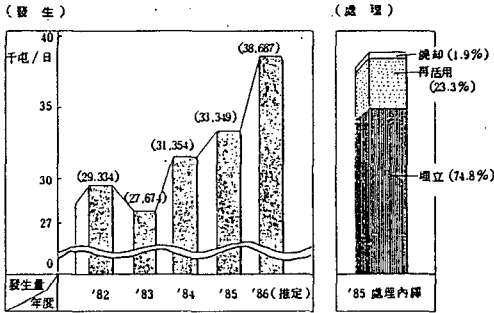
( '86기준 )

구분	시설 수	시설규모 (kl/일)	투자비 (백만원)	비고
계	175	12,936	117,094	
도시	83	11,068	85,587	
읍·면	92	1,868	31,507	

다. 産業廢棄物

'86의 産業廢棄物 발생량은 1일 38,687톤으로서 매년 10%이상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다. 이들의 廢棄物은 埋立處理에 74.8%가 의존되고 있으며 불과 1.9% 해당되는량이 燒却에 의존되고 있다. 특히 産業廢棄物은 총배출량의 23.3%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주시할만하다.

産業廢棄物 發生量處理施設



이들을 배출하는 배출업소를 보면 전국 10,272 개소이며 대구지청관할지역에 전국배출량의 약 50%를 점유하는것은 포항제철의 광재가 배출되는데 기인된다.

배출 및 처리업소 현황

( '85 기준 )

지청별	배출업소수 (개소)	배출량 (톤/일)	처리업소수 (개소)
계	10,272	33,349	35
서울	5,816	3,302	15
부산	1,790	3,589	16
광주	432	1,385	2
대구	1,396	15,663	-
대전	407	2,092	1
원주	431	7,318	1

라. 再活用

廢棄物은 資源化實態를 보면 공병등특정廢棄物에 대하여 1일발생량이 약 18,126 천톤중, 회수량은 7,789 천톤으로서 약 4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중 공병의 경우는 1,768 천톤 발생에 92%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廢棄物種類別 資源化率

종류별	발생량 (천톤)	자원회수율 (천톤)	회수율	비고
계	18,126.4	7,789.4	43.0	
공병	1,768	1,627	92.0	
폐지	2,626	990	37.7	
고철	12,767	4,783	37.5	
폐수지	962	387	40.5	
알미늄 캔	3.4	2.4	70.0	

廢棄物의 特性 및 實態

1. 쓰레기의 特性 및 實態

○ 1인1일 배출량

- 특별청소지역내 입구 : 30,620 천인
- 1일 배출량 : 61,100 톤
- 1인 1일 배출량 : 2kg

(단위 : kg/인/일)

외 국 예

- 일본 : 0.8
- 미국 : 2.2
- 영국 : 0.9
- 독일 : 1.0
- 프랑스 : 0.8
- 스위스 : 0.8

\* 1. 一般廢棄物 증가율 : 6.6%/년

2. 연탄재의 含有率 : 44.5%

○ 쓰레기의 지역별 발생량 및 성장

- 지역별 발생량

구분	계 (평균)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호남	기타
총발생량 (%)	61,100 (톤/일)	58	14	10	8	10
인구비 (%)	3,062 (만명)	48	19	11	10	12
1인당 1일발생량 (kg)	2.0	2.4	1.5	1.8	1.7	1.6

※ 쓰레기의 58%가 수도권에서 발생

－ 쓰레기 性狀

구 분	연탄재	금속·초차류	음식물류	종이류	목재류	기타	비 고
전 국	44.5 (7.2)	4.0 (41.3)	22.9 (7.1)	9.5 (6.3)	3.5 (28.1)	15.6	
항 구 도 시	38.5 (5.8)	3.6 (59.1)	36.7 (13.5)	8.5 (6.8)	4.2 (5.8)	9.0	부산, 인천, 속초, 포항, 울산, 군산, 목포, 여수, 제주
서 울	34.3 (7.3)	4.8 (33.9)	22.3 (17.8)	11.7 (4.3)	2.8 (36.7)	24.1	
미 국	-	20.3	16.8	29.7	3.4	10.6	정원쓰레기 19.2%
일 본 (도쿄)	-	3.8	37.3	38.7	5.2	6.6	플라스틱류 8.4%
일 본 (오사카)	-	20.2	16.0	31.1	6.2	10.6	플라스틱류 15.9%

- \* ( )內는 연탄재이외의 쓰레기 性狀
- \* 항구도시의 음식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 미국, 일본의 경우에 비하여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종이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 \* 금속·초차류의 비중이 낮아 再生分類시설 설치의 효율이 낮음

○ 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한·일간 비교  
－ 쓰레기 처리내역

(단위 : %)

구 분	埋立	燒却	再活用	高速堆肥化	其他	備考
한국('86)	94.7	2.4	2.2	-	0.7	
일본('83)	29.6	67.6	2.6	0.2	-	

2. 産業廢棄物의 특성 및 실태

○ 일반산업폐기물

－ 지역별 주요성분 (단위 : 톤/일, %)

구분	총배출량	제 1 위 성분	제 2 위 성분
서울	600	오니 230(38)	폐자동차 107(17)
부산	890	연소재 260(29)	광재 220(24)
대구	180	오니 70(39)	금속편류 39(22)
인천	960	광재 290(31)	오니 260(27)
경기	1,320	오니 740(56)	폐지 100(8)
강원	6,380	광재 3,900(62)	연소재 1,500(20)
충북	860	오니 670(68)	광재 170(20)
충남	2,050	연소재 1,600(80)	폐지 130(6)
전북	710	오니 250	폐목재 160(23)
전남	430	분진 270(63)	연소재 60(15)
경북	15,360	광재 12,600(82)	오니 860(6)
경남	2,400	분진	오니 550(23)
제주	200	식물성잔재 160 (82)	동물분뇨 30(12)

- \* 대도시 인근공장 및 전지역에 오니의 다량발생
- \* 경북의 광재 발생, 총배출량의 39%임 (포항제철)
- \* 제주는 식물성잔재 및 동물분뇨로 퇴비화가 가능

○ 특정산업폐기물

－ 1일 발생량

(단위 : 톤)

구 분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계	1,020	492	428	48	52
특정유해폐기물	69	35	21	-	13
폐산·폐알카리	534	341	188	1	4
폐유	228	72	105	41	10
폐합성수지	189	44	114	6	25

- \* 호남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충분한 검토 후 결정

○ 특정유해산업폐기물 처리장

(단위: 톤/일)

구 분	발생량		공동시설 처리량 (계획)	공 동 처리량 (%)	비 고
	재생량	처리량			
수도권	1	375	60	16	폐유, 폐합성수지제의
영남권	93	221	100	45	폐합성수지제의
호남권	-	1	40	-	

\* 수도권은 현처리시설의 능력부족

2.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주요골자

가. 계획수립의 배경

○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화, 산업화 및 국민경제의 향상에 따라 다량생산 및 다량소비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는 한편 그 질의 다양한 변화가 있으며

○ 폐기물의 처리비율이 증가되는 반면 한정된 국토에 埋立地確保가 심화되고 廢棄物의 처리기술의 폭이 확대되었고

○ 특히 도시계획이나 국토이용계획등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유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계획의 기본방향

○ 계획의 기본이념을

— 모든 廢棄物은 발생원에서부터 최대한 감량화하고

— 일단 발생된 廢棄物은 안정하게 처리하며

—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에 두었으며

○ 이를 위하여

— 합량화 자원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화하고

— 再生可能한 廢棄物의 회수율을 극대화하여 자원화를 촉진하며

— 餘熱利用이 가능한 燒却施設을 설치하는 한편 대단위 위생埋立地를 擴充하고

— 糞尿處理施設 및 有害産業廢棄物 처리시설의 擴充 및 他行政計劃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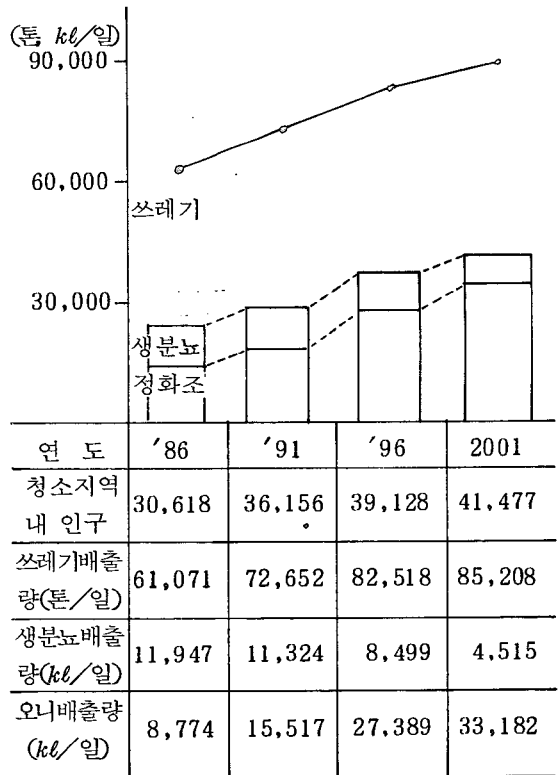
광역埋立地를 점차적으로 建設하는데 計劃의 기본방향을 두었다.

다. 장래예측

○ 쓰레기 및 糞尿排出量추이

쓰레기 및 糞尿排出量추이는 특별청소지역 인구의 변천 및 국민의 소득향상 및 물자소비량등을 지표로 하여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 2001년의 쓰레기排出量은 현재보다 약 1.4배가 증가되고 糞尿의 수거대상량은 收去의 便所의 감소로 2.65배가 감소되는 한편 汚水處理施設 및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汚泥는 수세식벽소의 증가 3.78배가 증가된다.

쓰레기 및 糞尿排出量



○ 産業廢棄物排出量추이

産業廢棄物의 배출량추이는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을 근거로 예측하였으며 2001년의 産業廢棄物 총배출량은 2.9배가 증가되고, 이 중 일반 산업폐기물이 2.8배, 특정산업폐기물이 5.1배가 증가된다. <19페이지 도표 참조>

라. 부문별계획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설치될 燒却施設은 서울시

1) 燒却施設

1기 의정부시 1기가 설치운영되어 1일 200톤

2001년까지는 총 36기의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1일 9,4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의 쓰레기를 燒却處理하고 있다.

段階別燒却施設의 건설

시 도	시 설 용 량 (톤/일)				기존시설용량 (톤/일)	대 상 도 시
	계	'86~'91	'92~'96	'97~2001		
전 국	9,450 (36)	2,650(9)	3,500(14)	3,300(13)	200	21 개시
서 울	5,400 ( 9)	600 × 2	600 × 4	600 × 3	150	서울
부 산	1,000 ( 3)	500 × 1	200 × 1	300 × 1		부산
대 구	400 ( 2)	200 × 1	200 × 1	—		대구
인 천	400 ( 2)	200 × 1	—	200 × 1		인천
경 기	400 ( 4)	100 × 1	100 × 2	100 × 1	50	성남, 수원 안양, 부천
강 원	100 ( 2)	—	50 × 2	—		춘천, 원주
충 북	100 ( 1)	—	100 × 1	—		청주
충 남	250 ( 2)	150 × 1	—	100 × 1		대전
전 북	200 ( 2)	100 × 1	—	100 × 1		전주
전 남	300 ( 2)	200 × 1	100 × 1	—		광주
경 북	100 ( 1)	—	—	100 × 1		포항, 경북 안동
경 남	400 ( 2)	—	—	200 × 2		마산, 위산
제 주	400 ( 4)	—	100 × 2	100 × 2		제주, 서귀포

2) 광역埋立他建設

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인구 10만 이상지역의 시를 대상으로 전국을 13개 지구로 구분 설치된다.

廢棄物埋立地가 지역별로 산재함으로써 침출수등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에 2차오염이 발생됨으로 권역별 대단위 광역埋立地를 설치할 계획

광역매립장설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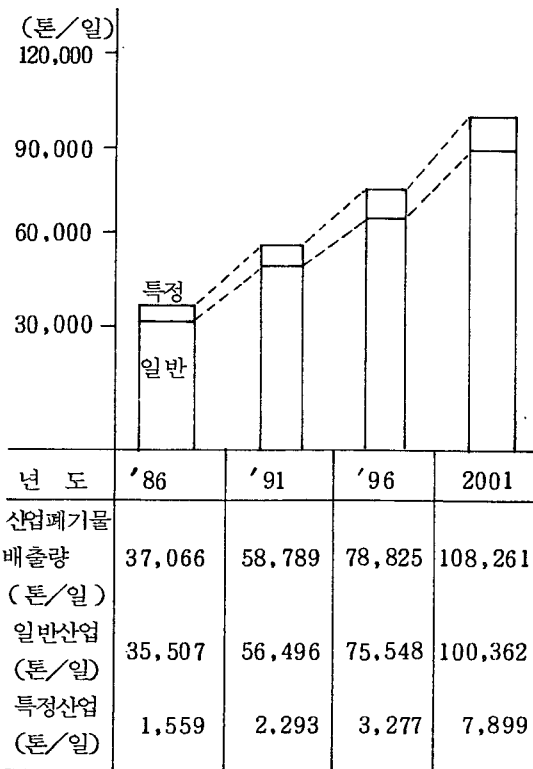
시 도	처 분 장 용 량 (만 $m^3$ )				광역처분장 명칭	소 재 지	대 상 도 시
	계	'86~'91	'92~'96	'97~2001			
전 국	20,714	3,098	8,977	8,639	13개지구	—	38 개시, 2 개읍
서 울	12,739	2,745	4,850	5,144	김포지구	인천시 및 김포군 인 접 간척지	서울, 인천, 부천
부 산	1,346	0	1,346	0	부산지구	부산시 사하구(진안)	부산, 울산, 김해
대 구	920	0	0	920	대구지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대구, 구미, 영천
인 천	1,300	270	490	540	김포지구	인천시 및 김포군 인 접 간척지	인천

경 기	1,033	83	770	180	우정지구	경기 화성군 우정면 (해안)	광명, 안양, 수원, 성남, 송탄
강 원	393	0	88	305	춘천지구 원주지구 강릉지구	강원 춘성군 동산면 강원 원성군 흥업면 강원 명주군 옥계면	춘천, 가평, 홍천, 원주, 제천, 충주 강릉, 동해, 삼척
충 북	264	0	147	117	—	—	—
충 남	377	0	377	0	대전지구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전, 청주, 천안
전 북	803	0	375	428	군산지구	전북 옥구군 미성읍 (해안)	전주, 이리, 군산
전 남	346	0	160	186	여천지구	전남 여천시 (해안)	여수, 순천, 여천
경 북	445	0	170	275	포항지구 안동지구	경북 포항시 경북 안동군 북후면	포항, 경주 영주, 안동
경 남	748	0	204	544	마산지구	경북 마산시 (해안)	마산, 창원, 진해
제 주	0	0	0	0	—	—	—

註: 1) '86~'91' 용량은 埋立地 조성이 완료가능한 1988년후 3년간의 용량임.

2) 부친은 김포지구에 포함

### 産業廢棄物排出量



약 13,000kl의 糞尿를 처리할 수 있으나 糞尿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부족되는 시설 95개를 擴充하여 1일 7,590kl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할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 분뇨종말처리장 시·도별 내역

시 도	처리장수 (개)	시설용량 (kl/일)	처리장명칭
전국	계	95	7,590
	시	33	5,895
	읍	62	1,695
서울	2	3,000	안양천, 난지
인천	1	300	인천
소계	23	1,330	9개시, 14군
경기	시	9	730
	군	14	600
	소계	10	430
시	4	300	춘천, 원주, 동해, 속초

### 3) 糞尿處理施設建設

糞尿處理施設은 현재 175개의 시설로서 1일

강원	군	6	130	홍천, 정선정선읍, 정선신동, 철원, 명주삼보
충북	군	3	35	괴산, 음성, 단양 (3개군)
충남	소계	11	595	2개시, 9개군
	시	2	320	대전, 천안
	군	9	275	금산, 논산, 사천, 보령, 청양, 홍성, 서산, 당진, 천원
전북	소계	6	295	3개시, 3개군
	시	3	240	전주, 이리, 정주
	군	3	55	고창, 부안, 김제
전남	소계	13	430	2개시, 10개군
	시	2	190	광주, 나주
	군	11	240	담양, 곡성, 구례, 여천삼일, 여천돌산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경북	소계	12	685	5개시, 7개군
	시	5	530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영천
	군	7	155	의성, 영일, 칠곡, 선산, 문경, 상주, 울진
경남	소계	12	405	4개시, 8개군
	시	4	215	진주, 진해, 삼천포 김해
	군	8	190	합안, 창령, 밀양, 거제, 남해, 함양, 거창, 하동
제주	소계	2	85	1개시, 1개군
	시	1	70	서귀포
	군	1	15	북제주

#### 4) 재자원시설의 건설

환경보전 장기계획에 의하면 폐기물의 자원화는 정부의 중요시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물론 국가동향 나타나고 있다.

2001년까지는 1일 1800톤의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再資源化施設建設

시 도	시 설 용 량 (톤/일)		
	계	'92~'96	'97~2001
전 국	1,800(900)	1,400(700)	400(200)
부 산	400(200)	200(100)	200(100)
대 구	200(100)	200(100)	—
충 북 대 전	200(100)	200(100)	—
천 북 전 주	200(100)	200(100)	—
전 남	소 계	400(200)	200(100)
	광 주	200(100)	200(100)
	여 천	200(100)	—
경 남	소 계	400(200)	400(200)
	위 산	200(100)	200(100)
	마 산	200(100)	200(100)

註: 시설용량은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처리분용량이며 ( )는 이중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을 나타냄.

#### 5) 기타계획

기타계획으로서 쓰레기의 수거 및 운반체계개선 또는 최종처리시설의 장비개선, 특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 특정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

지 역	시 설 용 량 (톤/일)			
	계	'88-'91	'92 - '96	'97 - 2001
계	320	160	120	40
수도권	110	60	50	—
서남해권	30	—	30	—
영남권	180	100	40	40

### 3. 폐기물 관리 제도

#### 가. 서 설

##### 1) 立法 趣旨

고도의 산업화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고 그 성장 및 특성이 다양하여 환경보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법체계를 단일화하여, 廢棄物處理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立法 背景

### (가) 汚物 清掃法

- 1961.12.30. 공포 법률 제 914 호
- 1973. 3. 8. 개정 법률 제 2584 호
- 1979.12.28. 개정 법률 제 3210 호
- 1982. 4. 2. 개정 법률 제 3554 호
- 1987. 3.31. 폐지

### (나) 環境 保全法

- 1977.12.31. 공포 법률 제 3078 호
- 1979.12.28. 개정 법률 제 3213 호
- 1981.12.31. 개정 법률 제 3505 호
- 1982.12.28. 개정 법률 제 3642 호

## 3) 法의 目的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用語의 定義(第2條)

(가)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재·汚泥·糞尿·廢酸·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일상 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糞尿 등 産業廢棄物외의 廢棄物

(다) “産業廢棄物”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잔재물·廢油·廢酸·廢알카리·廢고무·폐합성수지 등 廢棄物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

(라)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마) “분뇨정화조”라 함은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바)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은 埋立·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사) “汚水淨化施設”이라 함은 糞尿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로서 보건사회

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埋立·燒却·분해·중화·시멘트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재)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 5) 적용범위(第3條)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제외

나. 국가 등의 책무

### 1) 국 가

(가) 廢棄物處理에 관한 기술연구 및 개발 지원(第4條)

(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第4條)

(다) 시·도간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제4조)

(라) 廢棄物處理 기준설정(第7條)

(마) 국가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第8條)

### 2) 지방자치단체

(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제4조)

(나)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에 노력(第4條)

(다) 시·도지사는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 파악(第4條)

(라) 埋立地確保 등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第4條)

(마) 도지사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제5조)

(바) 대청소의 실시(第5條)

(사)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적환장 설치 및 관리(第6條)

(이) 관할구역안의 廢棄物處理 기본계획 수립

### 3) 국 민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노력(第5條)



나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거 대청소 실시  
다 정당한 사유없이 廢棄物 투기금지 (第 6條)

1) 특별청소지역 및 그 연안해역

2) 공원, 광장, 도로, 항만, 하수도, 하천, 운하, 호소, 산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다. 일반폐기물

1) 특별청소지역(第 9條)

○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 읍의 지역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 특별청소지역 제외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

3) 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들의 실무

가 변소 및 쓰레기용기를 설치 위생적으로 관리

나 쓰레기를 분리 보관

다 시장·군수가 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에 협력

4) 특별청소지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第 10條)

가 처리의무자: 시장·군수

나 대 행: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다 다량쓰레기 배출량은 스스로 처리

라 폐기물을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마 폐기물처리의 수수료 징수

5) 일반폐기물처리업(第 11條)

가 수집, 운반, 처리를 업으로 할 경우 시장·군수 의 허가

나 업 종

○ 분뇨수집운반업

○ 쓰레기수집운반업

○ 분뇨처리업(환경청장 승인)

○ 쓰레기처리업(환경청장 승인)

○ 정화조청소업

다 결격사유(第 12條)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과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범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 1 호 내지 제 4 호 1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第 14條)

가 糞尿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장이 승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나 설치 및 관리기준→보건사회부령

다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설치(第 15條)

○ 대상지역→대통령령

○ 대상건물→대통령령

○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규모→대통령령)

○ 설치전에는 시장·군수에 신고

○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검사

○ 병합처리시설(第 15條)

— 조 건: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

— 시 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

7)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第 17조)

가 환경청장에게 등록

○ 糞尿處理施設 설계시공업

○ 쓰레기처리시설 설계시공업

○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 분뇨정화조제조업(第 18條)

나 환경청장의 승인

○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糞尿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건축주가 자기 건축물의 오염정화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우
- (㉔) 시·도지사에게 등록
- 분뇨정화조 설치시공학
-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학

라. 산업폐기물

1) 사업자의 의무

- (가) 산업폐기물 발생량 억제
- (나) 산업폐기물 적정 처리
- (다) 일반폐기물을 구분 처리
- (㉕) 시·도지사에게 신고

(예외 : 환경보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㉖) 발생량, 재생이용상황, 처리실적 등 기록 보존

(㉗)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 제품·가공·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이 폐기물로 될 경우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가공·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품·재료·용기 등이 폐기물로 될 경우 회수조치 명령

(이 경우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고시)

2) 산업폐기물의 처리

(가) 처리자

- 사업자 스스로 처리
- 산업폐기물처리업자
-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나)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폐기물시설(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

(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설치기준 : 보건사회부령
-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청장의 승인(예외 :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마.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1) 기술관리인(第 27 條)

(가) 일정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

인을 둠(예외 : 스스로 기술관리를 할 경우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 관리인의 자격 등←대통령령

2)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第 28 條)

(가) 대상 : 폐기물처리담당자

(나) 내용 : 보건사회부령

3) 장부의 기록·보존

(가) 일반폐기물처리자

(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

(다) 산업폐기물처리업자

(라) 공공시설 설치·운영자

4) 휴업·폐업 등의 신고(第 20 條)

5) 보고 및 검사(第 31 條)

6) 廢棄物處理에 관한 조치명령

○ 처리기준

○ 청 문(第 33 條)

바. 부칙

1) 산업폐기물의 수입제한 요청(第 34 條)

○ 환경청장→상공부장관

2) 가축사육의 제한(第 35 條)

(가) 일정한 지역에 사육제한

(나) 축사의 이전명령

○ 6개월이상의 이전 유예기간

○ 이전에 부지알선→시장·군수

3) 분뇨사용의 제한(第 36 條)

○ 특별청소지역안

4) 폐기물처리사업 조정(第 37 條)

○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

5) 국고보조(第 38 條)

(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단, 특정유해물질 포함)

6)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第 39 條)

○ 시·도지사→환경청장

7) 허가 등의 수수료(第 40 條)

○ 보건사회부령 규정

8) 권한 및 사무의 위임·위탁(第 41 條)

9) 시행령(第 42 條) \*